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

검 토 보 고

I. 개요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: 제1221호
- 다. 제출일자: 2016. 5. 30
- 라. 회부일자: 2016. 6. 2

2. 제안사유

- 가. 서울특별시는 지역중심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집행기능의 전문성,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미래에너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 중임.
- 나. 설립예정 공사의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적정규모의 출자가 필요하여 현재 집단에너지공급 시설 전체를 출자하고자 함.
- 다.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출자개요
 - 대상기관 : 서울에너지공사

○ 출자규모 : 3,376억원 ※ 서울특별시 전액출자

(단위:백만원)

구분	합계	토지	건물	구축물설비
규모		79천㎡	30천㎡	2,970종
평가액	337,630	203,713	12,018	121,899

※ 위 평가액은 2015년 12월 감정평가 실시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추후 재감정평가지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

○ 서울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현황

구분	목동	노원
위치	양천구 목동서로 20	노원구 덕릉로 70길 99
공급지역	3개구 9개동 (강서구, 양천구, 구로구)	3개구 10개동 (노원구, 도봉구, 중랑구)
공급시설	· 보일러: 1,020톤(9기) · 터어빈발전기: 30.2MW(5기) · 열수송관: 87.4km × 2열	· 보일러: 750톤(5기) · 터어빈발전기: 37.0MW(1기) · 열수송관: 84.5km × 2열

나. 출자의 필요성

- 現 서울시 소유의 목동 및 노원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토지, 건물, 열공급설비 등을 서울에너지공사에 출자하여 사업의 지속성 유지 및 신규 설립되는 공사의 재무건정성 확보
- 서울시 약 25만가구에 대한 안정적인 열공급, 신재생에너지의 확대.보급,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사업,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및 효율화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

다. 추진일정

- 출자대상 자산에 대한 재감정평가 실시 : 2016년 7월
- 출자금 납입 및 공사설립 등기 : 2016년 9월
- 출자대상 토지,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: 2016년 10월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,
「지방공기업법」제53조(출자)

나. 현물출자 자산 요약 1부

다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

라.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추진현황 1부

마. 현물출자 세부내역 1부(별도제출)

II. 검토의견

가. 개요

- 본 출자 동의안은 현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재정적 기반마련을 위해「지방공기업법」제39조에 따라 3,376억원 상당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하고,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.
- 본 동의안은 서울에너지공사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토지, 건물, 열공급시설 등을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금액은 3,376억원임.
- 「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서울시가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1조원(현금, 또는 현물)으로 되어 있음.
- 이번 현물출자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새롭게 설립되는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자라는 점에서 문제는 없지만,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건전성¹⁾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현금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1)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누적적자에 대한 원인분석을 수행하여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위해 발생한 적자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현금지원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공사·지방공단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3.8.>
-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-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1. ~5호 생략
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 7. ~11호 생략
- ② 생략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36조(중요 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

-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"이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을 말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③ ~ ④ 생략
-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·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0.2.4.>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~ 2. (생략)

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·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~ 7. (생략)

8.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·처분

9. ~ 13. (생략)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